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프로그램

10:00 - 10:05	내빈소개
10:05 - 10:10	인사말
10:10 - 10:55	발제1. 무국적 사할린동포의 대한민국 국적확인소송 판결 내용 및 의의 - 윤지영 (국적소송 주심 변호사)
	발제2.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지우기 -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발제3. 사할린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이은영 KIN(지구촌동포연대)
10:55 - 11:35	토론1. '사할린 국적확인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문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토론2. 사할린 동포의 국적관계에 관한 소고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토론3. 사할린한인 문제 및 우리 정부 지원현황 김정한 외교부 동북아역사TF 참사관
	토론4.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박인규 사할린 희망캠페인
11:35 - 12:00	질의응답

목 차

[발제]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 판결의 내용 및 의의	윤지영	11p
[발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지우기	한혜인	23p
[발제] 사할린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이은영	33p
[토론]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문	조경희	47p
[토론] 사할린 동포의 국적관계에 관한 소고	기지성 김민성	51p
[토론] 사할린 한인 문제 및 우리 정부 지원현황	김정한	59p
[토론]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박인규	65p

인 사 말

국회의원 전 해 철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지구촌동포 연대(KIN),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2차 세계 대전 종전 당시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조치 등으로 인하여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사할린 거주 동포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타국에 끌려가 정착하게 된 이들로써,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이래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1세에 대해 한일 공동으로 영주 귀국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000여명이 영주귀국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 안산 '고향마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주귀국 어르신들은 사할린 현지 가족과 또 다른 생이별을 하는 외로움과 고충을 겪고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동반가족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할린 현지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 활성화 등 동포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고국의 따뜻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사할린 동포가 적립했거나 납부했던 저축금과 보험금, 우편예금 및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환수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외교적인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국회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현재까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계속적인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이번 국적판결의 의미를 살려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사할린 동포사회의 현실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으로 이주한 후 약 60여 년 동안 머나먼 타국에서 격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무국적자 아닌 무국적자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동포들의 아픔에 애석함을 표합니다.

또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사할린 동포들의 척박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타개하고자 '사할린 변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약 1년 여의 준비 끝에 변호단에서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국적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러시아 국적 사할린 동포를 대리하여 위로금 지급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국적확인 소송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올해 6월 드디어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그 취지에 따라, 사할린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 즉 관련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토론회가 부디 사할린 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발 제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확인소송 판결의 내용 및 의의**

윤지영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 판결의 내용 및 의의¹⁾

-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2구합26159 판결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I. 들어가며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있다. 이들의 수는 43,000에 이른다.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령」을 제정하여 당시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에 할양된 사할린에 강제 징용했다.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은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강제 징용한 조선인은 사할린에 내버려두었다. 이후 사할린은 소련에 편입되었는데 소련은 사할린에 방치된 조선인을 일괄적으로 무국적자로 처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러시아 국적이거나 북한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 수교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할린 동포에 무관심했다. 1990년 9월 30일 한소수교가 이루어진 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2009년 시민단체와 동포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이 꾸려졌고, 2010년 5월에는 사할린 동포 지원 변호인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방문 후 사할린 동포 지원 변호인단은 2건의 소송을 기획했다. 무국적 사할린 동포를 대리한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과 러시아 국적 사할린 동포를 대리한 위로금 지급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이 그것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정하고 있다. 위 2건의 소는 모두 2012년 8월에 제기되었다. ‘위로금 지급 각하 결정 등 취소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 ‘대한민국 국적 확인’ 사건은 2014년 6월 19일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승소 확정되었다. 이 글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II.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의 주장

1) 이 글은 민주변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행) 복간호(2014. 12. 내 발간 예정)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는 1910. 5. 18., 원고의 어머니는 1924. 1. 3. 각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게 되었다. 원고의 부모는 사할린에 거주하던 1954. 1. 10. 원고를 낳았다. 원고의 부모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1977. 2. 17., 1983. 1. 7. 각 사망하였다. 원고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뜻에 따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 거주해 왔다. 이에 원고는 부모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에게 국적과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고, 여권을 신청하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국적 판정 절차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분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국적법」 제20조 제1항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는 국적판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원고가 자신의 국적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국적판정 제도가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임에도 국적판정 제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적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Ⅲ. 쟁점

일단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무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다. 그런데 이 쟁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동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국적 동포라고 했을 때 동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무국적 동포의 국적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포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동포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를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당해 정의에 따르면이라도 동포가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하다. 이론이 없지는 않지만 이 글에서는 대체적인 견해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겠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무국적 동포는 '국적이 없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해석된다. 이러한 무국적 동포는 크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견해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원고의 부모가 조선인이었고 원고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 왔음을 입증하는 서류들²⁾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무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적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을 보면 피고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다.

그 다음 쟁점은 국적판정 제도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곧바로 국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해 쟁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적 확인 혹은 국적 판정에 관한 일련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IV. 무국적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혈통주의를 취하는 「국적법」에 있어서는 「국적법」 제정 당시의 국적자를 정한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 경과 규정은 국적 취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피보호-피병합-외세군정-분단(재독립)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적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들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법」의 경우 경과 규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그런데 「국적법」이 제정된 1948년 12월 20일 당시의 시점에서 누가 당초의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결정하는 경과 규정이 「국적법」을 비롯한 그 어디에도 없다³⁾. 「국적법」을 제정할 때 한국인, 즉 대한민국 국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2)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국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협약이다. 이에 따라 협약 가입국이 발행한 공문서는 당해 협약 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만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원고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고 부모의 각 사망증명서, 원고의 출생증명서, 원고의 러시아 무국적 상태 거주권에 각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가 반드시 유의되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한의 한인, 둘째, 북한의 한인, 셋째 재외 한인 중에서 「국적법」 제정 당시 어느 범위까지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명확히 하여야 했다. 이런 논의와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국적 동포의 국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2. 학계의 입장

무국적 재외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 대해 학계는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948년 5월 11일 제정) 제1조는 “본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함”, 제2조는 “좌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2.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3.~5. 생략)”,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적법」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의 계속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조례에 의해 조선호적에 있는 자와 일본호적에 있었다가 이를 이탈한 자는 조선국적자가 되고 이 조선국적자는 「국적법」 제정 이후 한국 국적자로 자동 전환되었다는 본다⁴⁾. 반면 조례의 계속적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에서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적법」의 입법적 불비를 지적하며 「국적법」을 개정할 것을 지적한다⁵⁾. 한편 호적에의 등재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국적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적으로서 한인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⁶⁾.

3. 국회 및 정부의 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회에서의 「국적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재외 동포들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보지 않는 듯하다.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주장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 중 제1조를 제외한 각 조문 중 대한민국의 국민을 한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법률의 소급효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 이 법 제정 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한 구체책이 없으므로 이를 한인이라고 수정하여 이 법 제정 이전에 출생한 한인은 이를 국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려는 것”이라는 수정 이유를 달아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3) 노영돈, ‘사할린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제138쪽

4)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5) 노영돈, ‘재일한인의 국적’, 백산학보, 2004. 4.

6) 이철우, 이호택, ‘한인의 분류, 경계 확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런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회 수정안이 삭제되고 다시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국회의 태도는 재외한인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사건에서 정부는 이들을 무국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 반면,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조선적 재일동포가 무국적자임을 전제로 F-2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안에서 조선적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대한민국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지만, 원고가 무국적이라는 점, 동포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예컨대 호적에의 기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독립운동가의 경우 호적이 없더라도 무국적자나 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제시대에 해외로 망명하여 1948년 「국적법」 발효 전에 사망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가를 무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법률안 3개가 2005년에 발의되었는데 정부는 “무국적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일제시대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일용 무국적자가 되나 호적은 국적의 득실 등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일제시대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하였다면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하여 미군정하의 조선의 국적을 가지므로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 다른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선 국적을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 받은 자의 지위에 관하여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 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반면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됨이 원칙이고, 무국적의 외국 거주 동포는 여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무국적 동포를 무국적자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참조). 참고로 이 사건의 상

7) 노영돈, 앞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

고심에서 대법원은 무국적 동포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함이 없이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협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만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5.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할린 거주 한인의 이주 경위와 국적 취득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한인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지 않았더라면 1948. 7. 17. 제정된 헌법(이하 '제헌헌법'이라 한다)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제헌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적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었다. 한편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헌헌법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국적관련 법률관계가 규율되었다. 임시조례는 제2조에서 조선의 국적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제1호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한 혈통주의는 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이하 '제정국적법'이라 한다)에도 이어져 제정 국적법 제2조 제1호는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이 규정 내용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임시조례 제2조 제2호는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제3호는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제4호는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다만 혼인 해소에 의하여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한다), 제5호는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다만 귀화의 요건 급 귀화인의 권한은 별로 법률로서 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헌헌법과 제정 국적법에 따르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으로서 임시조례 제2조 각 호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선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자녀, 특히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제헌헌법 공포 전에 출생한 경우 임시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등 참조), 제헌헌법 공포 후에 출생한 경우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또는 제정국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6. 소결 - 이 판결의 의미 및 한계

이 사건 판결은 무국적 동포의 국적을 법리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기존에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었지만 무국적자에 대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무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법원은 임시조례의 계속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호적에의 등재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호적에의 등재 여부를 따지게 되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무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자발적으로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수는 극히 적다. 현실적인 이유로 절대다수의 동포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예컨대 재중 동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다. 참고로 재중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를 가지고서만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슬픈 과거사를 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이어진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과의 일그러진 정치적 관계를 동포들에게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동포 전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려 했던 논의 과정 및 제한적이거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현행 「국적법」을 고려한다면 무국적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눈여겨 볼만하다. 동 지침은 중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들의 국적회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지침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원조회, 체류동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는 신청의 근거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심사나 허가 기준이 없다. 결국 동 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원하는 동포나 국민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핏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반쪽 자리 정부의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은 강요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적 재일동포 중에는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자도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권법」 제14조제1항은 “외교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출입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법제 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 받더라도 다시 차별을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V. 국적판정 제도와 소의 이익

「국적법」 제20조는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국적판정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적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고 법무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적을 판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적판정 제도는 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가. 즉 국적판정 제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국적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 아니면 먼저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판정 결과에 불복할 때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인가.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국적판정 제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 형태로 국적 확인을 구했다. 국적판정 제도를 거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해 절차는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적 판정 제도에 관해서는 법무부에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 지침은 국적 판정 신청자가 신청 당시부터 판정 시까지 국내에 머무르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국적 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 체류자격 등을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하여야 하고 입국 후 국적 판정 신청을 한 후 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한다. 동 지침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적 판정 신청자가 심사 도중 잠시 출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 및 결정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한다. 요컨대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국적 판정 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 확인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원고가 자신의 국적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국적판정 제도가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임에도 국적판정 제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적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적판정 제도를 거친 자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비보유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모순된 주장을 하였다. 즉 당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

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국적법」 제2조 이하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적은 국민의 자로 출생한 사실 등이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거나 인지에 따른 신고, 또는 귀화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로 출생한 사실이 없어 「국적법」 제2조에 의한 국적자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로써 원고의 국적이 박탈되거나 변동되는 것이 전혀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한들 이는 원고가 「국적법」이 정한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⁸⁾.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국적 판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국적판정 제도는 국적 판정을 간이하게 받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국적 판정에 대해 정부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만약 국적판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국적판정 제도를 소송의 전치요건으로 하여 행정소송법과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이 된다.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는 「국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적판정 절차를 통해 원고가 손쉽게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함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적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적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마련된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 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그런데 러시아 사할린주에 무국적자로 거주하는 원고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적판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가, 원고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행증명서나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적판정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원고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판정을 신청한 후 거주(F-1) 또는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아 다시 출국하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국적판정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8)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22051 판결

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룰 것인데, 이 경우 원고는 시간과 비용에 있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법원은 원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중략) 나아가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국내로 돌아와 정착하지 않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및 관계 법률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지원·보호 등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VI. 결론

무국적 사할린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은 법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무국적 사할린 동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단 무국적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다. 재중 동포에 대해서는 배제적인 태도를, 재일 동포에 대해서는 포섭과 사상 전향을 강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독립운동가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는 국민으로 끌어안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에게 국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국적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근현대적 역사적 산물의 부산물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적을 핏줄·민족과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의미를, 헌법 제2조제2항이 정하는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무국적 사할린 동포를 국민으로 확인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이들 무국적 사할린 동포를 찾아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미 외국 국적을 얻은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도 위로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동포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발 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지우기

한혜인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지우기

사할린 한인의 본질적 문제와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과제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 머리말

역사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식민지기 강제동원 되어 간 조선인들의 미귀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 다른 역사문제에 비해 영주귀국 등 한일 정부 간 절충으로 조금씩 해결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해당사자인 식민지기 1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문제해결의 지점이 또다시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뉘는 문제의 지점이고, 그것에 의해 또다시 사할린 한인의 가족이, 마을이 해체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단순히 귀환과 미귀환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국민’인가, 어느 지역까지 ‘우리’인가를 묻는,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사할린 동포 국적인정 판결」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하다.

본 발표는 지금까지 미귀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사할린 한인을 둘러싼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상기해 볼 것이다. 사할린 한인의 문제가 내면적 공동체인 ‘우리’라는 구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국민’이라는 외면적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포섭되고 배제되는지, 그리고 ‘구제해야 할 피해’라는 범주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분열시키고 해체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런 고찰은 사할린 한인 문제가 우리에게 물어왔던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의미를 보다 깊게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 해결이라는 것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과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실지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하겠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구별되는 ‘한국국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주 속에서 현재 사할린 한인을 어떻게 ‘우리’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귀환의 책임과 강제동원의 상관성

(1) ‘조선인’의 애매한 ‘국적’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패전 후 일본인의 인양(귀환)문제는 이동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일단 일본국민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동의 원인이 강제든 아니든, 일본인이란 전제가 성립되면 귀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미귀환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적이탈’로 인해 생긴 문제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인은 ‘한일병합’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인에게는 일본제국의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즉 조선인은 1923년 「조선총독부령154호」로 조선후적을 작성하고, 이 조선후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조선 및 일본 재주를 불구하고 조선에 귀속하는 사람, 즉 조선인이었다. 타이완의 경우도 타이완호적령에 의해 일본인과 구분했지만, 그들에게는 일본제국 「국적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제국신민의 일본인과 타이완인의 일본국적은 외국국적의 취득에 따라 국적이탈이 인정되었지만, 조선인의 경우는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적이탈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⁹⁾ 이 국적이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본인이 아닌 다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식민지기 이산은 그것이 자발적인 이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조선적의 일본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보다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제국에 완전히 구속되어 있던, 마치 노예문서와 같은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는 귀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징용령과 같은 일시적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임을 이탈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들의 「국적법」의 미실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귀환의 책임은 전쟁책임의 일부라기보다는 식민지기 점령지역의 조선인의 귀화를 막기 위해 국적법 자체를 실행하지 않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구제해야 할 피해의 범주

그러나 이 문제가 협소한 ‘강제동원’과 연결되게 된 것은 조선인의 귀환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일본 국회 및 정부에서는 1945년 패전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일본의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의 귀환조치에 관하여 일본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1952년 이후의 일은 “귀환조치와 같은 국민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사자국 소련과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권침해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했다.¹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 당시 “1937-1945년간 일제에 의거, 강제징용으로 화태에 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귀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¹¹⁾ 일본에서는 귀환의 문제를 국가가 행하는 국민의 회복으로 인식했던 것에 비해 한국정부는 미귀환의 원인에 중점을 두어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후책임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귀환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 한국정부 및 미귀환 당사자는 강제동원을 보다 더 강조하여 일본의 전후책임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강제동원을 전제로 할 경우 일본의 귀환책임을 분명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의 범주와 귀환대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할린의 한인 이주는 191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베리아출병에서 돌아오는 일본 군인들과 함께 들어온 2,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몰려들어와 조선인촌을 형성하기도 했다. 물론 1939년 이후 독신노동자들의 강제동원이 급격하게 늘긴

9)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国籍と戸籍』, 明石書店, 2010.

10)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의원간담회 편,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와 일본의 정치』, 경운출판사, 1994.

11) 「Ⅲ급비밀 재화태교포 귀환문제」, 1972년 2월 4일, 외무부 아주국 동북아1과, 『재사할린 교민 귀환문제, 1970-73』. 한혜인,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제102호. 재인용.

했지만, 해방 직전 인구분포로 보아 강제동원 이전의 인구는 남성인구는 전체인구의 3분의 1, 여성인구는 2분의 1에 해당했다.¹²⁾

자신 혹은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경우는 이 논의에서 크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1927년에 벌목농장을 하기 위해 사할린에 들어온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1932년에 사할린의 에스토루(惠須取)에서 살았던 김옥순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귀환, 귀환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강제연행 당한 사람이 우선이 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자유도항자들은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사할린에 살아도 될 것 같았다.”¹³⁾

귀환의 대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사할린 한인 사회에 넓게 퍼져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강제동원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1920년대 일본군을 따라 들어올 수 밖에 없었던 신한촌 조선인의 역사나 1930년대 홋카이도의 불황에 의해 쫓겨간 조선인 노동자 등은 그 상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할린에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에게는 조선에 귀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귀환의 권리는 일본인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했던 국적을 둘러싼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귀환의 책임을 강제동원이 원인인 것으로 했을 경우, 일본의 책임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기는 했지만, 전시기 강제동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적 배제와 미귀환의 근본적 피해의 전모, 귀환의 대상 축소하는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에 비해 일본인의 귀환의 경우, 일본국민의 범주를 확대해 가면서 귀환의 범주를 넓혀 갔다. 해방 직후 귀환은 일본적을 가진 일본국적자만을 귀환시켰고 1956년부터 시작된 집단 귀환에서는 조선적을 가진 일본여성을 일본국적자 취급하여 귀환을 시켰다. 이 집단 귀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인이 사할린에 잔류했었는데, 이들에 관련해서도 역시 일본 후생성은 귀환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후생성은 ‘미귀환자 명부작성’이라는 업무가 있었다. 일본에 있는 잔류가족이 후생성에 미귀환자를 신고하면, 명부에 등재해서 후생성에서 의무성을 거쳐 미귀환자가 생존하고 있다고 확인되면 상대국 정부에 귀환의지를 타진한다. 귀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귀환을 시키고 현지인과 결혼한 것이 확인되면, 미귀환자의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자원잔류자’로 분류해 둔다.¹⁵⁾ 이런 작업 속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귀환자 범주를 넓혀가면서 자국민을 구제해 갔다. ‘자원잔류자’일지라도 1988년부터는 일시 귀국을 가능하게 했고, 이 때 18세 미만 미혼자는 함께 귀국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¹⁶⁾

사할린 한인은 귀환책임을 일본에 추궁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의 귀환은 이 강제동원 피해가 귀환의 전제 기준이 되어, 일본제국의 논리, 즉 이

12) 한혜인,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제102호.

13) 김옥순, 『回想記』, 미간행, 1992.(2009년 수정고), 홋카이도개척기념관 소장자료.

14) 실질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 즉 1세로 그 범주를 정해 의 경우 강제동원이 원인이 아니어도 귀환은 가능했지만, 다양할 수 있었던 사할린 한인의 피해를 강제동원의 범주에 가두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15)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의원간담회 편,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와 일본의 정치』, 경운출판사, 101쪽.

16)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의원간담회 편, 위의 책, 102쪽.

주의 시기가 강제연행의 기간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에 따라, 구제해야 할 국민과 구제할 수 없는 비국민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일본제국에 의해 배제되었던 일본 국민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3. 한일청구권협정과 사할린 한인 문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일 간의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청구권의 문제와 미귀환의 문제로 구분했다. 미귀환의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끝난 직후, 1966년부터 한국이 요구하는 유골반환 문제와 더불어 그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91년 2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가라시 고조 사무국장이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관하여 한일조약에 있어서 청구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협정의 제2조에서 한일 양국 및 양국 간 청구권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조에 조금 더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서도 이 제2조의 규정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적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 및 이 협정을 받아들이는 일본에서는 한국분 들의 청구권 재산청구권의 문제를 법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만, 일정하게 예외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는 만일 사할린에 잔류된 분들 중에서 한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도 이 협정과 법률의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가라시 고조 의원은 당시 사할린 한인이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야나이 순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적이 없다면 한일청구권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사할린에 있는 한인이 한국적을 취득한다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¹⁷⁾ 즉 일본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주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한가? 우선 현재는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 공개에 따라 사할린 한인 문제는 미해결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일 과거사 문제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한인 문제, 원폭피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규정하고, 군인·군속, 노무자 등의 강제동원 피해(이하, 강제동원피해로 표기)에 대해서는 해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해결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 1」(이하 지원법)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지원법의 취지를 보면 현재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지원은 「한일청구권협정」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에서 미비했던 보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 지원법은 위의 두 가지 법적 체계와 밀접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17)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의원간담회 편, 위의 책, 98쪽. <國會會議錄 40> 중의원 예산위원회 1991년 2월 22일.

그러나 이 지원법이 구제하는 보상대상에 대한 범주 및 그 기준이 일관되어있지 않아 여러 소송을 불러일으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일 예로, 2011년 2월 24일에 국내동원 피해자가 소원한 지원법위헌소송 결과는 매우 기묘한 현상을 보여준다. 2011년 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만 지원하는 「지원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국내동원” 피해자도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주장¹⁸⁾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를 배제한 논리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자신들의 배상책임을 줄이려는 의도 아래 한반도 내에서의 동원을 제외해 버린 사실에서 비롯¹⁹⁾되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구자 및 시민단체가 대립구도를 이루었고,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국내동원 피해”도 강제동원 피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헌결정을 한 다수의견 판사들은 박씨의 헌법소원을 ‘부진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라고 전제했다.²⁰⁾ 즉, 다수의견 판사들은 국내동원 희생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국내동원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내동원의 피해가 강제동원의 피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국가재정 상 국외동원을 우선적으로 채우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관련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생각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내동원피해가 강제동원의 피해로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동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다투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주에서 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는 사할린 한인의 문제가 청구권협정에서 미해결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그 미해결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할린 한인의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종결한 후, 대일청구권자금 운용을 위해 마련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965.12. 20.)을 기초로 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밝혔지만²¹⁾, 여기에서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논의 속에서 한국정부는 청구권자금 속에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신고법」과 「

18) 「기고 국내 강제동원도 보상받아야 한다/히구치 유이치, 『한겨레신문』, 2011년 3월 4일; 「일제 강점기, 조선이 강제동원 ‘국내’서도 이뤄져, 『매일경제뉴스』, 2011년 3월 14일; 「日 정부의 한반도 내 강제동원 인정 문서 첫 확인, 『경향신문』, 2011년 3월 14일.

19) 「세설 일제하 국내 강제동원도 보상해야, 『중앙일보』, 2011년 3월 11일.

20)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판사들은 이것을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봤다. 즉,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률과 무관하게 아직까지 전혀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의 종합적 해석 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에나 공평의 관점에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 확인」(2011.2.24.2009헌마94))

21) 한혜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사학연구, 2014.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을 제정하여 전시기 사망자, 기탁금, 예금, 우편저금, 보험 등 재산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을 보상하기로 했다.

즉,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되었거나 징용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했다. 신고권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이 참석한 정무회의를 거쳐, “군인, 군속으로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 및 실종자, 노무자로 노무에 종사 중 사망 또는 실종자로 정했다.”²²⁾ 이후, 호적상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통지서 확인서류만으로도 접수하도록 했으며 반대로 사망통지서는 없더라도 호적상 피징용자로 사망이 확인되면 신고접수도록 했다.²³⁾

기탁금에 관련해서는 피징용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청구권보상 틀에서도 위반된다는 야당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피징용자의 기탁금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보상하기로 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으로 하여 신고 대상에 넣었다.

민간청구권을 규정하는 틀로써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선 지역적 범위였다. 정부여당은 “속지주의적 원칙”에 따라 보상범위를 한국과 일본에 국한했다. 재무부 장관은, “2차세계대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한국민의 재산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일본의 모든 재산은 그 지역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구권해결에서 예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견지했다.²⁴⁾

따라서 예금 등에 관련되어서는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 금융기관에서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 송금, 이 경우의 금융기관도 일본금융기관이어야 하고, 동시에 본점이 일본국에 있어야 하며, 당해 해외송금은 환거래 결제분에 국한되고, 일본은행권이 아닌 일본계통 통화(예를 들면, 대만은행권)와 일본국이 발행한 일본군표는 제외했다. 우편저금, 우편연금 또한 일본국에서 예입하거나 납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채권이 일본국정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했다.²⁵⁾

따라서 피징용자가 가지고 있는 군표와 우편저금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우편저금, 즉 야전우편국 또는 해군군용 우편소에 예입한 통상우편저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군표 역시 해방직후 즉 1945년 9월에 태평양 및 육군사령부 포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무가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했다.²⁶⁾

고재필 의원이 “첫째, 사할린 즉, 화태에 가서 지금 있는 동포들한테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피징용자에 대해서 남방에 간 사람, 또 38도선 이북의 피징용자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재무부 차관은 “화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고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여기서 신고하더라도 사망자 같으면 구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피징용자의 경우에 있어서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은 어디를 가든지 신고가 가

22) 「피징용사망자범위 결정 대일청구권신고시행령」, 『동아일보』, 1971년 4월 2일.

23) 「일부 신고절차 보완 대일민간 청구권」, 『매일경제』, 1971년 5월 25일.

24) 제57회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1966년 7월 6일

25) 위의 자료

26) 위의 자료

능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즉, 금융권과는 달리, 징용피해의 경우는 징용지가 어디였든지 관계없이 신고자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²⁷⁾

이와 같이 한국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을 바탕으로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에서 사할린 한인이 그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편저금의 경우도 소유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면,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문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4. 맺음말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지금까지 강제동원과 더불어 생겨난 미귀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일본의 전후책임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사할린 한인의 귀환책임은 일본임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미실행이라는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결의 방식은 강제동원의 피해와 연결시킨 일시적이고 배제의 틀이 아닌, 식민지 지배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의 틀을 1세나 2세, 3세 등 제국의 역사, 식민지의 역사의 틀 속에서 구획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식민지 이전, 혹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국민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할린 재주 무국적 한인에게 주어진 한국국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제국의 논리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체제 또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 속에서 무엇이 해결되었는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해결된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국국민에 대해 실행해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할린 한인의 문제에 관련해서 1970년대는 한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해결된 문제로 인식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미해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이중적 판단을 일단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1970년대의 판단에서 본다면, 사할린 한인이 한국국민의 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 체제로 들어오게 된다. 물론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 협정이지만, 적어도 한일청구권협정 안에서 해결된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7) 제75회 제14차 법사위원회 회의록(1970.12.23.)

**사할린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

이은영

사할린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이은영
KIN 지구촌동포연대

I. 사할린한인 문제의 개요 및 현황

- 1920년대부터 풍부한 석탄, 산림자원을 활용한 화태 개발을 위해 많은 조선인 동원
- 1938년 이후, 국가총동원령에 의한 모집, 관알선, 징용으로 인한 강제 동원
- 종전 후 1946~59년 당시 일본인 30만명과 일본인 부인을 둔 일부 한인 약 2천명 일본으로 귀환 (45년 당시 조선인 4만3천여명 추정)
- 잔류 50여년만에 한-일 양국의 합의로 영주귀국시범사업 실시.
 - 2014년 1월 현재 4,116명 영주귀국(3천여명 생존)
 - 영주귀국은 1945년 8.15이전 사할린 거주 및 태생자와 그 배우자만을 대상, 2인 1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식들과 이별하는 또 다른 이산가족을 양산하는 구조.
- 사할린 현지에 남아 있는 1세들에 대한 지원 미비
-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개인 재산권 문제 미해결
- 이중징용 피해 조사 및 반인도적 전쟁범죄(학살)에 대한 조사 미비

II. 청산되지 못한 문제 그리고 한일 양국의 책임

1. 미귀환의 책임

- 종전 후 1946~59년 당시 (일반) 일본인²⁸⁾ 30만명과 일본인 부인을 둔 일부 한인 약 2천명만 일본으로 귀환.
- 1978년, 소노다 스나오 외무대신의 ‘법률적 이상의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발언에 이어 1990년 4월 나카야마 타로 외무상은 일본 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죄 표명²⁹⁾
- 1975년, 박노학 등이 중심이 된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의 활동으로 「화태잔류자귀환 청구소송」 제기
- ※ 일본측 주장: 1952년 4월 19일 일본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할린한인의 귀환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없으며, 다만 정치적, 인

28)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 일본인이란 영어로 “Japanese Nationals”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갖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당시 한국·조선인은 일본국적을 갖는 일본국민으로서 취급되었지만,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그들은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귀환과 원호 30년의 발자취(引き上げと援護30年の歩み)」)

29) “자유의 의사가 아닌 당시 일본 정부의 강압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되어 취로당한 분들이 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이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 머물러 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이 비극에 이분들에 대하여 일본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주장 전개.

⇒ 15년간 소송 지속됐으나, 원고의 사망 또는 소의 원인 소멸(영주귀국사업) 등의 이유로 본안판결 없이 종결됨.

○ 1989년 모국방문사업을 위한 한일간 외교교섭과정

- 1965년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은 사할린한인의 귀환 등의 문제에 대해 이미 법적 책임은 소멸되었고, 다만 종전과 같이 인도적, 역사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등 운운하며 모국방문사업을 위해 일정 비용 부담한다고 함.

○ 2013년, 영주귀국사업 종료.

- 2013년에 영주귀국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사할린 현장에 남아 있는 영주귀국 희망자가 모두 영주귀국하는 2015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합의.

2. 배상 책임

1)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미반환금에 대한 배상 책임

○ 강제동원 당시 대부분의 임금을 우편저금과 간이보험 등으로 강제 저축함.

○ 1997년 현재 일본 우정성에 의하면 우편저금 59만 계좌, 액면 금액 1억8천700만엔 / 간이보험 22만건, 7천만엔³⁰⁾이 확정채무로 되어 있음.

○ 1990년 8월 29일, 일본 정부에 1인당 1천만엔의 보상금 청구하는 「사할린진류 한국조선인 보상청구소송」(소송대리인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 등, 대한변협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 후원) 제기. 1994년 7월 취하.

○ 2007년 9월, 사할린잔류한인과 한국영주귀국자 등으로 구성된 이회팔 등 원고 11인은, 동경지방법판소에 「사할린잔류한국·조선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소송대리인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 등) 제기. 2011년 9월 취하.

※ **일본정부:**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소련국적 혹은 무국적자)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³¹⁾ 통장 원본이 있을 경우 지급하겠다는 입장. 2010년 사할린 잔류 한국, 조선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한국국적 취득이 확인된 자는 1965년 6월 22일 시점에서 재산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

※ **한국정부:** 2013년 6월 3일, 한일외교 당국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구술서 전달)
- 한국 외교부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한인은 한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 인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

30) 1998년 3월 19일 제142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2분과회에서, 센고쿠 요시토 의원의 “사할린잔류한국인의 미불 우편예금, 간이보험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정성 저금국 업무과장 나가자와 긴조는, “사할린에서 이용되고 있는 우편저금 등의 계좌수 및 현재 잔고는, 1997년 3월말 현재로, 우편저금에 관해서는, 계좌수로 약 59만건, 현재 잔고는 약 1억8700만엔, 간이생명보험에 관해서는, 건수는 약 22만건, 금액은 약 7000만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회답했다.

31) 1991년 2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회회의록 40」), 이가라시 코조 의원의 “확정채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있게 되는지 어떤지” 묻고,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에 관해서 한일 조약에서 청구권 포기란 것은 그들에게도 미치는지 어떤지” 하는 질문에 대해, 세찌야 가츠즈꾸 우정대신은 “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반도 출신자의 우편저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의원이 지적했듯이 확정채무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며 우편저금법상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 출신자 중에 소련적과 무국적 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있으면 우편저금법령으로 정하는 바 이슬로 계산하고 있어 이자액을 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보낸 구술서(문서번호 OZB-1013)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른바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영광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되어 방치된 한인들(이하 “사할린 한인”)이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할린에는 한국으로의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한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조속히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이와 같은 협력과 병행하여 양국 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는바,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이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이러한 입장의 불일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명백히 구성한다.

생존한 사할린 한인의 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청구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희망하며, 또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대해 가급적 조기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3일, 서울. 대한민국 외교부.

Ⅲ. 미청산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사할린동포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국회에서 사할린동포에 대한 정책 및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으로, 특별법안 6건/ 결의안 7건/ 건의안 2건이 이루어졌음.([자료1.] 참조)
- 한·일 적십자사간에 「사할린거주 한국인지원 공동사업체」가 결성(1989년)되어 영주귀국 및 일시모국방문과 사할린 역방문에 대한 예산조달 및 사업전반을 공동으로 실시
-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1990년 제정)을 통해 영주귀국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음.
-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마련을 위해 17, 18대 국회에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18대에서는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졌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조례가 유일함(2014년 제정).

[자료1.] 사할린동포 관련 국회 활동(제헌국회~18대 국회)

의안번호	의 안 명 / 제안자	제안일자	의결결과
190636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정의화의원 등 10인)	2013-08-13	소관위 회부
190254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등 17인)	2012-11-13	소관위 상정
1812337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대안) (위원장)	2011-06-23	원안가결
1810148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윤성의의원 등 12인)	2010-12-06	임기만료폐기
1809265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영의원 등 24인)	2010-09-06	임기만료폐기
1805104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화수의의원 10인)	2009-06-12	임기만료폐기
180412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의의원 등 29인)	2009-03-10	임기만료폐기
17374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명숙의원 등 91인)	2005-12-30	임기만료폐기
173297	'사할린 동포의 날' 지정을 위한 결의안 (김원웅의원 등 14인)	2005-11-10	임기만료폐기
172965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위안부·사할린역류자·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 결의안 (유기홍의원 등 51인)	2005-10-18	임기만료폐기
172915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장경수의의원 등 62인)	2005-10-13	임기만료폐기
130496	사할린동포모국방문및귀환촉구결의안(위원장)	1989-03-07	원안가결
090050	사하린교포송환촉구에 관한 건의안(박영록의원 외 22인)	1973-09-22	수정가결
070217	사하린(화태)역류교포송환촉진에 관한 건의안(정일형의원 외 26인)	1968-04-23	원안가결

2. 필요성

- 사할린 동포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회나 정부 모두 공감.
-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접근과 대책 마련(※[자료2] *사할린동포 자필편지 참조*)
 - 20년 넘게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기초로 한 영주귀국사업에만 전념하는 한일 정부의 무책임함(일본은 영주귀국 등 지원 대상을 1세로만 한정하고 있음)
 - 국적에 따른 위로금지급 대상 제외는 특히 사할린현장에 남아 있는 사할린한인 1세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와도 같음.
 - 건강 및 자식 문제로 영주귀국을 포기한 사할린 현장의 1세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역사 보전 및 미래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
 - 이름 없이 묻힌 1세(홀애비)들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위령 시설 건립 필요(현재 사할린 주 주요 도시의 공동묘지에는 일본인 위령탑이 세워져 있음) (※[자료3] *'화태의 일본인 위령탑' 참조*)
 - 사할린한인의 역사 보전과 계승, 미래세대와의 연결점 마련 등을 위한 '사할린한인 역사 문화센터'(가칭)(이하 '사할린센터') 건립 절실.
 - 2014년 10월 12일, '사할린센터' 건립을 위한 한-사할린 간 양해각서를 체결,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됨. (※[자료4] *'양해각서' 참조*)
- 한일협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사할린 동포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일본과의 외교협상 문제이므로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제도정비가 절실.

3. 법제정을 통한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의 기반 마련

□ 사할린 동포 지원 관련 법안 개요(19대 국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계류중) : 2012.11.13. 발의(전해철의원 등 17인)
- △ 제안이유: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하여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은 이산가족으로서의 고충과 외로움을 겪고 있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영주귀국의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 △ 주요내용
 - ◇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 사할린동포 국내 유족 지원,
 - ◇ 사할린동포에 대한 진상조사, 기념 및 추모사업,
 - ◇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 등이 포함.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계류중) : 2013.08.13.(정의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의 합법적 거주국 체류자격 획득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역사 기념사업 등을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 주요개정내용

- ◇ 현재 사할린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사할린동포가 고려인동포에 포함됨을 명시
- ◇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신설
- ◇ 대한민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등 언론활동 지원 사업 및 의료지원 사업 신설
- ◇ 고려인 동포지원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사업 신설

※ 영주귀국자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 및 외교적 마찰, 타 동포와의 형평성, 유사기관과의 중복성 문제 등 각 정부부처에서의 반대로 인해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국회 의원 귀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복만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에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 하는 바입니다.

저는 쿠르노사할린스크에 사는 김현숙입니다 1937년 4월 8일
처의 남편은 김억용 1924년 3. 3일 출생

안동 김씨 2004년 6월 24일 사망

남편의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감은동 172
1943년 5월 15일 강제 징용으로 들어와 마까로브
탄광에서 일하였답니다. 버는 돈은 저금을 했답니다.

해방후 저금 통장을 도둑 맞았답니다.

남편은 해방후 마까로브 레리공광 제 삼호 레리기
금광공으로 40년을 일하다가 불구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주 귀국도 하기 못하고 이 사할린땅에서
문헛습니다. 나의 과손들 : 아들 김병일. 1958. 6. 11.

딸 김일라. 1955. 9. 25.

딸 김일순. 1961. 10. 7.

남편은 세상 떠날때까지 무국적을 가지고 있었음.

나도 무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5년도 3월 23일에
조선 국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할린에 / 세노인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다.

하루 속히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회 외무 통일 위원회 임법 심이관 이진표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990년도에 이진표 귀하께서 사할린 마까로브를
방문하셨을때 우리들이 헌청을 찾아달라고 부탁 드렸더니
헌청들을 찾아 사진을 부쳐 주셔서 수월하게 남편이
91년도에 한국에 가서 동생들과 상봉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9일. 김현숙 올림

총정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저는 박금덕입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군 내신면 중리에서, 1935년 1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1948년 8살 나이로 부모님들과 같이 사할린으로 들어와 옛날 나이로 한광마을이었고, 지금은 고르노 자원스크에서 67년 동안 살고 있으며, 저는 9살부터 조선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52년도에 7학년은 겨우 딸이었으나, 어퍼닐이 항상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동생들을 먹여살리려고, 짐발병을 걸고 있으며, 매일 상침에 가서 온종일 줄을 지어서, 플레브를 한두등을 사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으로 지내다가, 1955년도 남편 황이한씨 경상북도 구와시 신산에서 태어났으며, 1943년 17세의 나이로 강제징용을 당해 화제로 끌려와 한광생활을 하였으며, 그러다 어와 결혼하여, 아들 둘 딸 하나를 길러냈어, 부모님들 걱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재키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연금도 축적이 없어서 받기 시작하였으며, 남편은 연금생활로 지내다가 98년도에 세상을 떠나시었으므로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기관지염으로 한숨 앓고 있는 몸이 되어 이곳에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하나, 하루-하루 세월을 보낼 뿐입니다.

사할린 고르노 자원스크에서

박금덕 올림 2011년 1월 26일

특별 법안을 통과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박순채 1937년생 경상북도
침도군 이서면 수야에서 태어나 43년
도 부모님을 따라 화태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그러 9살에 해방하여 한국어
사변 배우다가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
여 더 배우지 못하고 53년에 난편을
만나 일남 사녀를 나옵니다. 이래 오
남매입니다. 난편은 87년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저는 영주귀국을 자식
다 여기 두고 못가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대가 마나 약값도 마나 듭
니다. 여러가지 부탁 드리 도와주세요.
배우지 못해 되지 않는 글 아라주세요.

특별 법안을 통과해주세요.

과연 선 박순채

※2011년,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사할린 현장과 영주귀국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사할린 방문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각 지역의 한인들 250명의 자필편지를 받았다. 이 자필편지들을 수록하여, 450쪽에 달하는 자필편지 모음집<1>, 『고향가는 길이 인생길이었습니다』를 만들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과 함께 국회 외통위 위원 28명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뒤늦게 한국으로 도착한 편지 132통과 사할린 강제동원 국내유족의 편지 16통,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의 자필편지 7통을 한데 묶어 350쪽에 달하는 『고향가는 길이 인생길이었습니다II』를 발간, 이 역시 동포들과 함께 위의 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자료3.] 화태(사할린)의 일본인 위령비

樺太の日本人慰霊碑



㉠古屯



㉡敦屯



㉢敦番



㉣惠須取



㉤知取



㉥珍内



㉦白浦



㉧落合



㉨泊屋



㉩野田



㉪真岡



㉫豊原



㉬留多加



㉭大泊



㉮本斗



㉯内橋

*순서대로. 뽀뽀지노, 슄미르너히,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프, 크라스노고르스크, 브즈모레, 돌린스크, 토마리, 체훅,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바, 코르사코프, 네벨스크, 고르노자보드스크(현재 러시아지명으로 표기함).

양해 각서(MOU)

러시아 소재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한국 소재 지구촌동포연대 및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5년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동시에 동포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가칭)사할린한인역사문화센터’와 영면하신 동포들의 위패를 모실 공간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사할린의 제반 동포 단체들과 동포들을 대표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해당 사업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공간(대지) 확보의 책임이 있는 바, 이를 위해 사할린주 정부와 및 유즈노 사할린 스크시의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해당 부지를 마련토록 노력한다.
3.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본 건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비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 모든 동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지구촌동포연대와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해당 건축물의 건설에 소요될 자원과 장비 등을 마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특히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위패를 모실 공간의 건립 및 운영 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기로 한다.

본 약정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양해각서로서, 상기 명기된 내용 범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추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한다.

2014. 10. 12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임용군 (서명)



KIN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김종철 (서명)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회장 김홍지 (서명)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 총장 리인수 (서명)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회장 박순옥 (서명)



사할린 한국 한인협회
사무 총장 송용강 (서명)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문

조경희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문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1.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내용은 크게 귀환문제, 배상문제, 국적문제로 나뉜다. 세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히 맞물리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무엇보다 일본이 정당한 탈식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은 물론이다. 1945년 이후 미국의 점령 하에 놓인 일본은 식민지 청산을 방기한 채 조선인들의 법적지위를 임시방편으로 취급하였고 그 후에도 “일본 국적 상실”을 이유로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문제를 외면하였다. 또한 냉전체제의 심화와 이로 인한 체제경쟁은 그들의 국민적 귀속(국적문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냈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 과거사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일본의 탈식민화 부재라는 점을 일단 확인해야 한다. 한편에서 사할린 한인 과거사는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한다. 정책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이, 냉전체제를 이유로 국가가 해외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방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0년 동안 무국적으로 살아온 사할린 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임이 확인된 이번 판결은 이 점에서 당사자 뿐 아니라 세계 재외동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60년 동안 보호하지 않았던 점 또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할린 과거사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씌워 온 역사를 생각할 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 재외동포들의 국적문제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발표문 중에서 국적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다.

2.

먼저 한혜인 선생님은 발표에서 일본의 귀환책임을 강제동원에만 제한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사할린 한인의 귀환책임을 일본인임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미실행이라는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인 등과 달리 조선인에게만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조선 식민지 지배의 특이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사실이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불분명하다. ‘국적법 미실행’이라는 사실이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귀환과 보상을 배제하는 논리로 실지로 활용되었던 적이 있는가? 혹은 만약 조선인들에게 국적법이 적용되어 당시 일본국적을 이탈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할린 한인들이 러시아 등 제3국 국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었고 이처럼 비인권적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인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이라는 좁은 범위, 혹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애매한 차원을 넘어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법을 근거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는데, 국적법의 적용/미적용이라는 문제가 식민지지배를 둘러싼 전후책임 문제에 근본적으로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를 좀 더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언급한바 같이 이번 국적확인 소송 판결은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윤지영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그들의 “호적에의 등재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렇다. 조선적 재일조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적에의 등재를 국적의 근거로 따지게 되면 닭과 알 논쟁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호적 또한 근대적, 국가적 산물이며, 20세기 초에 조국을 떠난 재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귀속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기술적 차원을 떠나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음을 명시하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의무”에 언급한 판결은 무국적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참으로 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무국적자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재외동포들과 국적에 대한 고민을 더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보호받지 못한 무국적자들의 경우, 국적취득이 기본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지만 외국적 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과거청산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적취득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윤지영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를 가지고서만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슬픈 과거사를 망각하는 것”이라 하면서 외국적 동포들에 대한 한국국적 확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국적선택이 가능해지는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지만, 현재 동아시아에서 국적은 국가와 국민 간의 일정한 법적 계약관계보다는 배타적인 국가정체성을 심어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크다. 특히 냉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분단국가인 경우, 서로가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적부여나 여권발급 자체가 다분히 체제경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복수국적 허용은 주권의 약화나 탈국가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논리가 관철되는 현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³²⁾.

과연 과거에 국적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당한 재외동포들에게 다시 국적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민족’ ‘동포’라는 감정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키우고 이를 권리화하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학계에서는 이미 혈통주의에 입각한 민족개념을 비판한지 오래됐으나 재외동포들을 포함한 한반도의 과거사에 접근할 때, 국적에 회수되지 않는 민족적 권리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고국권, 귀환권과 같은 법철학적 개념³³⁾은 이를 생각하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찌됐든 사할린 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처럼 국가와 단절된 자들이 조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판결의 취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32) 이철우,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이중국적의 논리」, 『한국사회학』 제42집1호, 2008.

33) 이재승,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민주법학』 제52호, 2013.

사할린 동포의 국적관계에 관한 소고

김진성

사할린 동포의 국적관계에 관한 소고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1. 들어가는 말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은 '89년부터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들의 일시 모국방문사업을 계속해 왔고, 2007년부터는 사할린 한인 1세들의 영주귀국 확대 요청으로 기존의 영주귀국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국내 영주귀국과 관련, 사할린동포의 국적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절차 등 국적판정제도 및 국적판정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사할린 동포의 국내 법적 지위와 복수국적 허용여부 등의 국적관계를 순차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 제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허가 대상자는 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사할린동포 1세 및 그의 배우자로 북한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국가 이익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³⁴하고 있다. 사할린동포 1세의 경우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국민으로 실질적으로 처우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는 국적보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할린동포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에서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혈통으로 추정 되나 혈통의 연원이나 대한민국 국적취득 과정의 입증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우리 국적법은 국적판정절차를 거쳐 국적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국적판정의 법적 성격

국적판정제도는 '97년 제4차 국적법 개정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어떠한 개인이 우리나라 혈통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국적변동 내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자인지 아니면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판정함으로써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국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적판정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형성적으로 취득 또는 상실

3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업무 처리 지침 제6조(영주귀국 허가요건)

하도록 하는 처분이 아니라 판정시점 현재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국적판정 절차

국적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판정신청서를 작성,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적판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본인과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한다³⁵⁾. 사할린동포 1세의 국적판정 신청 과정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대한적십자사(국내), 또는 재외공관의 장(국외)을 통해 영주귀국 신청
- 2) 대한적십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영주귀국허가 신청
- 3) 외교부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영주귀국허가에 대한 의견 및 신원조사 의뢰
- 4) 법무부 등에서 외교부로 영주귀국허가 의견 회신
- 5) 외교통상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 요청
- 6) 법무부에서는 외교부 및 신청인 당사자에게 국적 판정 결과 통보
- 7)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취적), 주민등록

다. 국적판정(사할린동포) 현황

연도별	'98년 ~'06	'07	'08	'09	'10	'11	'12	'13	계
판정자	1,313	600	150	450	511	83	70	63	3,240

'98년 국적판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년까지 국적판정자 3,416명 중 사할린동포로 국적판정된 자는 3,240명으로 전체 국적판정자의 약 95%에 해당되며, 사할린동포 외 국적판정자는 북한이탈주민(북한적 소지 재중조선족교포)이고, '14. 11월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4명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을 추진 중에 있다.

3. 사할린동포의 국적 관계

가. 사할린동포의 국내법적 지위

사할린 동포의 사할린으로의 유입 경로는 첫째, 대륙에서 온 고려인 후손들이고, 둘째, 강제징용 세대와 취업차 온 사람들이며, 셋째 일본 또는 북한에서 온 파견근로자들로 구분된다.³⁶⁾ 사할린동포는 '38년 개정 소련 국적법에 따라 '자신과 외국국적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무국적자로 간주한다'는 규정하에 무국적자로 처리되었고,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일본으로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1952년) 등으로 인하여 사할린에 잔류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의 대다수는 러시아국적을

35) 국적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36) 조성길, 러시아 CIS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차이(한인소식지 사할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영주귀국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할린동포는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사할린동포의 국내법상 국적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적법은 국적법 제정 당시에 최초 국적을 가지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적에 관한 최초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가 제헌헌법 공포 전에 출생한 경우,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에 의해 조선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에 따르면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한 점, 일제는 대만인과 사할린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조선훈적령에 따른 조선훈적은 일본 호적법에 따른 일본호적과 준별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과 조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법적 구별이 존재하였던 점, 조선훈적령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재조선미군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에 의해 효력이 지속된 점, 임시조례 5조는 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국적을 소급적으로 회복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조례에서 말하는 조선인이란, 일제시대에 조선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 즉 조선훈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나. 사할린동포의 복수국적 적용 여부

1) 사할린동포 1세(45. 8. 15. 이전 출생자)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 하도록 규정³⁷⁾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판정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의무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실상 복수국적을 용인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이 ‘48. 5. 11.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의 국적을 부여받은 조선인 및 그의 후손들은 ‘48. 7. 17. 제헌 헌법 제3조,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사할린 동포가 출생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이 무국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강제 징병 등의 사유로 러시아 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출생할 당시 그 부가 우리 혈통이었던지 여부 및 출생한 후에 그가 자진하여 다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가 우리 국민을 부로 하여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주귀국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에 대해서는 비자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이 없이 계속 보유해 오고 있는 자로 판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 직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을 자진취득 한 것이 아닌 실효성 없는 국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러시아 국적의 상실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국적판정제도로 이들을 포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³⁸⁾이다.

37) 국적법 제10조, 제15조

2) 동반 영주 귀국한 1세의 배우자 ('45. 8. 15. 이후 출생자)

현행 1세의 배우자는 1세의 국적판정 후, 국적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배우자의 귀화허가 여부를 일반적인 간이귀화 신청자와는 달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국적판정을 받은 1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3) 1세의 직계비속

현행 1세의 자녀(러시아 국적취득자)는 1세인 부 또는 모가 국적판정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 받은 경우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1세의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무국적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취적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1세와 같이 국적판정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2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³⁹⁾에 의하면 재중동포 1세대의 자녀들(1949. 10. 1. 이후 출생자, 이하 재중동포 2세대라 한다)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과 중국의 국적을 아울러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므로,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과 중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사할린동포 1세대의 자녀들(1945. 8. 15. 이후 출생자)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

4. 맺음말

현행 국적판정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고 있는 부류는 사할린동포 외에 북한 이탈주민이 있는데,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적판정신청 장소를 국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적판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국내 정착하려는 점, 국적판정신청자의 출생연원과 국외이주 경위, 국적의 변동 관계 등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신청인 당사자와의 면담과 필요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점,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북한적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관계(혈통관계 소명자료 등) 자료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혈통관계 및 외국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적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므로 국적판정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사할린한인회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1차적인 확인과정을 거쳐 외교부 허가를 받아 영주귀국을 하고 있으며, 최근 소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은

38) 국적법(법문사), 석동현 저

39) 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3헌마806 반대의견

무국적 사할린동포 2세의 경우, 국가 이익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처리지침'상의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어 관계기관 협의 및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 영주 귀국하여 국적판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행정청의 국적판정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심사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영주귀국 대상 사할린동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무국적자로 있는 사할린동포 2세 등이 얼마나 잔류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현행 장애인녀와 함께 이들을 영주귀국대상자에 포함시켜 영주귀국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국적판정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할린 한인 문제 및 우리 정부 지원 현황

김정한

사할린 한인 문제 및 우리 정부 지원현황

김정한
외교부 동북아역사TF

1. 사할린한인 문제의 경위

-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전쟁수행 목적으로 한인 동원을 시작하여 약15만 명의 한인이 사할린으로 이송
- 이중 약10만명이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본토 노동력 보충을 위해 이송되었고 소련의 사할린 점령후 일부가 탈출함에 따라 46년 당시에는 약43,000명의 한인이 거주한 것으로 파악
- 이후 일·소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과 그 가족 송환 등으로 일부가 귀환한바 90년까지 약40,000명의 한인이 잔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한소관계 개선과 수교를 계기로 모국방문과 개별 영주귀국 등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 본격 실시

2.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현황

(1세 영주귀국 지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비용분담

- 사할린한인 1세(1945.8.15 이전 사할린 출생 또는 거주자) 분들 대상으로 영주귀국 지원사업 실시
 - 1세 및 그 배우자, 그리고 1세의 자녀(2세)로서 장애인인 경우에 대해 영주귀국 지원
 - 1997-200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이후 확대사업을 실시중
- 그 결과 개별귀국을 포함하여 1990-2013년간 총4,190명(2세 포함)의 사할린한인 귀국
 - 올해 12월에는 약100명 귀국 예정(이들을 위해 귀국시 유의사항 등 설명과 애로청취를 위한 유관기관 출장단 금11.5 파견)
- 귀국한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정부가 귀국항공료 및 정착비, 주택, 기초 생계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양국정부 지원내역

한국 정부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주택 지원 · 기초생계급여 : 월 488,063원(1인), 831,026원(부부) · 특별생계비 : 월 7.5만원(1인) *아파트 관리비 보전 명목 · 의료지원 · 사망시 장제비 75만원, '망향의 동산' 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안산고향마을아파트(500세대), 인천 요양원 건립 (100병상) · 귀국항공료 및 정착비(세대당 26만엔) 지원 · 영주귀국자 사할린 역방문사업 (01-13년간 5,474명)

(영주귀국자 사할린 역방문 지원) *일본정부 비용부담

-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 1세에 대해 사할린 현지 역방문 지원 실시

3.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반환 지원문제

(배 경)

- 2007.9월 사할린한인 11명(거주지: 사할린 6명, 한국 4명, 일본 1명), 일본정부와 일본우정공사를 상대로 강제예금한 우편저금과 간이보험 반환 소송 제기(동경지방법판소)
 - 원고들은 우편저금과 간이보험 13,780엔(당시 액면가)의 2천배인 2,756만 5천엔 청구
- 동 소송에서 일본정부는 지불금액을 법정이자만을 가산한 비현실적인 금액(대략 액면가의 5배)을 제시 / 또한, 영주귀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이 소급적용된다는 이유로(동 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기해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권 불인정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 서명시점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시 한국국적 미보유자였던 사할린 한인은 동 협정 대상에 불포함된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표명
- 원고측, 2012.9.13 소송을 취하/ 2012.11.23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외교장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정부 조치사항)

- 헌법소원 제기이후 우리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 소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對日 구술서 전달(2013.6.3)
 - 아직까지 일측으로부터의 회신은 없는 상황

-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사할린한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검토

/끝/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박인규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박인규

사할린희망캠페인단 청년분과위원장

사할린희망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가 사할린 한인 문제에 다가섰던 과정을 살펴보고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고,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1. 2004~2014년 10년간의 여론화 과정

KIN은 각국 재외동포의 현안을 공유하고자 기획한 2004년 NGO 대회에서 당시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회장의 발언으로 사할린 한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후 사할린특별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였으나, 17대 국회에서의 사할린특별법 제정은 국회임기만료폐기로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KIN은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다.

2006년에 열린 NGO 대회에서 참가자 전체가 안산 고향마을을 방문함으로써 사할린을 알 수 있게 했고, 곧바로 사할린 현지에서 사할린 피징용 한인을 위한 문화행사 및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세상을 떠난 사할린 한인의 넋을 종교단체와 함께 거의 처음으로 위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KIN이 사할린 한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7~2008년 동안은 워크숍 개최, 현지 실태 조사, 홈페이지 개설, 자료 제작 등에 시간을 쏟으며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행동으로 옮겨 달성한 첫 목표가 사할린지역 조선인 유골 및 묘지 실태 조사인 것은 놀랍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확인하여 국내로 유골을 봉환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2009~2011년 3년간 KIN이 직접 묘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묘지 조사 사업은 2011년부터 정식 정부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KIN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으리라 본다. 묘지 조사 사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보를 밝혀내며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2009년에 KIN에 하나 더 주목해서 볼 것이 있다면 사할린희망캠페인단의 발족을 들 수 있다. 사할린 한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또한, 전국사할린영주귀국단체협의회와 잔류 사할린 한인 동포가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특별법 통과를 절실히 호소하였고, KIN의 입법로비 활동도 많이 늘어났다. 이에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국회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며 4건의 발의와 18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할린포럼이 구성되는 등 관심도 커졌다.

한편 관련 소송도 점차 시작되었는데 위로금 등 지급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고, 국적확인 소송 원고에 대한 면담과 조사가 잇따라 이루어졌다. 사할린 한인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변호사와 활동가가 합심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2012년 또 한 번의 국회임기만료폐기로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당시 한미FTA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었고, 사할린특별법은 안건 상정 조차에서

도 밀리게 됨으로써 소관 위원회의 대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빛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미 구성된 사할린희망캠페인단이 또다시 구체적인 활동을 선포하며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 되기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돌이켜 생각해보았을 때, 국내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여론화를 이끈 지구촌동포연대와 사할린희망캠페인단은 <인식 - 참여 - 조사 - 조직 구성 - 피해자 구제>라는 짜임새 있는 과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 반영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할린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사할린 한인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사할린 동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었으며, 작게는 음력 달력 전달 크게는 사할린역사기념관 건립이라는 과제를 스스로 떠맡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상대로 사할린 한인에 대해 알리는 자리와 기회를 끊임없이 창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할린희망캠페인단이라는 조직이 국내에서 더 확장되지 못한 것은 한계로 꼽을 수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직 내 구성원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자체적이고, 대외적인 활동이 다방면으로 꾸준히 기획되었다면 대중과 언론매체와의 소통도 더 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두 번씩이나 사할린 특별법이 폐기되면서 사할린 한인 문제가 여론화되지 못할 경우 논의 대상에서 속절없이 밀려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주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

2. 2015 사할린희망캠페인의 과제

위에서 지적한 사할린희망캠페인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할린희망캠페인단은 청년분과 위원회(이하 청년분과)를 2013년 12월에 발족하였다. 청년분과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사할린 한인 문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 동참 인원을 차츰 키우기 위해 내년도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이다.

그중 지난 10.11~10.12일에 사할린 한인 문제를 알리는 첫 캠페인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참여한 청소년들이 제작한 피켓을 토대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피켓 수의 약 30%가 사할린 섬의 위치를, 25%는 사할린에 조선인들이 끌려가게 된 배경을, 20%는 사할린희망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15%는 일본의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10%는 국내 영주귀국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담은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러시아의 낯선 땅 사할린에 일본에 의해 조선인들이 끌려갔다는 사실 자체에 생소함을 느끼고, 어디에-왜 끌려갔는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다. 그 중 특징적이었던 것은 청소년들에게 사할린 한인 문제가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 기억되어 과거 문제로 인해 파생된 현재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으며,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만큼 사할린 한인을 방치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뒀다는 점은 놀라웠다.

사할린 한인 문제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 지난 얘기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되고 있었기에 사할린 잔류 한인과 국내 영주귀국자들의 현황과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고민과 언급은 매우 적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구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이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만큼이나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로 현황과 실태를 언급하는데도 적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 감성적으로나마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국과의 외교적 교섭 등과 같은 책임 있는 행동과 자세를 견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것은 크게 보면 민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2015년 사할린희망캠페인의 중요한 과제는 현재로 남아있는 과거의 문제를 환기하는 '역사와 기억의 현재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로 한일 양국의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할린을 크게 세 측면에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대일 과거사의 문제로 미귀환 사할린 동포 문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영주 귀국 한인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처우와 실태에 대한 공개다. 세 번째는 생이별 되거나 영주 귀국을 하지 못하는 사할린 잔류 동포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2015년은 '해방 70년, 한일청구권 협정 50주년'의 해로 첫 번째 요건인 청산하지 못한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적기이다. 또한, 사할린 현지에서는 최근 사할린 역사기념관 건립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문화센터를 구축하는 데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에서 특별법 제정, 기념관 건립 관련 모금, 한인 1세의 유골 및 전체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 일본 등에 흩어져 있는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 공개 요구 및 수집, 유엔 차원의 실태 조사 요구 등 당면한 사할린 한인의 과제를 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사할린역사기념관이 조만간 건립되기를 바란다. 이는 그간 아무런 돌봄 없이 조국만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떠난 그들에게 늦게나마 우리가 보내는 추모의 묵념이자 작은 위안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memo

